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8

발의연월일: 2020. 7. 24.

발 의 자:태영호·홍준표·이종배

송언석 · 정희용 · 김용판

金炳旭・이명수・박성민

김정재 · 서범수 · 임이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동해 북방한계선(NLL: Northern Limit Line)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바 있음.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「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교류·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

시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3조의2, 제4조의2, 제7조, 제26조 등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나.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강제송환의 금지) 북한이탈주민은 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 및 「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」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.

제3조의3(송환 결정 등) ① 북한이탈주민의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는

북한이탈주민 송환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두며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.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 원이었던 사람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중 "국가"를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국가"를 각각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"로 한다. 제7조의 제목 "(보호신청 등)"을 "(보호신청과 조사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

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"를 "임시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5항) 중 "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" 을 "내용과 방법,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제8항에 따른 합동심문에 필요한 사항은"으로 한다.

-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전담할 북한이탈주민조사관(이하 "조사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- ⑥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신청자에게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- ⑦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⑧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 후 통일부 등 관계기관 과의 합동심문을 실시한다.
- ⑨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 또는 합동심문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.
- ① 국가정보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보호신청자의 권리) ①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원하는 보호신청자를 위하여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.
 - ④ 보호신청자는 조사관의 조사 과정 및 관계기관의 합동심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사관 및 관계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제7조의3(국제기구와의 교류·협력)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보호신청자의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국제기구나 보호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 - 1. 보호신청자 면담
 - 2. 제8조의 보호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
- 제15조제2항 중 "통일부장관"을 "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"으로 한다.
- 제15조의2제1항 중 "통일부장관"을 "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
장"으로, "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"를 "지역적응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통일부장관"을 "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"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"지방자치단체장"을 "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말한다)에게 신청하는 경우"를 "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신청하거나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"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29조제1항 중 "국가"를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한 경우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<u>군사분</u>	1 <u>다</u>
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	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	<u>당하는</u>
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	
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	
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	
<u>니한</u> 사람을 말한다.	
<u><신 설></u>	<u>가.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</u>
	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
	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
	<u>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</u>
	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
	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
	<u>한 사람</u>
<u><신 설></u>	나.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
	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
	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
	지 아니한 사람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강제송환의 금지) 북한
	이탈주민은 「시민적 및 정치

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 및
「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
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
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」
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
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
한다.

- 제3조의3(송환 결정 등) ① 북한 이탈주민의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송환결정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통일부장관 소속 으로 두며,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
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
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
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

제4조의2(<u>국가</u>의 책무) ① <u>국가</u>는 저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·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 및 생활보호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<u>국가</u>는 제1항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 런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 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 사람

- 3.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
 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
 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 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	들의2(<u>국</u>	가	및	지방	자치	단체
의	책무)	1	국가	및	지방	자치
<u>단</u> :	체					
			_			

②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</u>----

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 야 하다.

제7조<u>(보호신청 등)</u>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 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	7조	: <u>(</u> 보	호	신청	성과	る	스	등	<u>·)</u>	1	•
	2	(현	행글	라	같음	<u>)</u>					
	3										
						<u>임</u>	시년	킨호	.조	刻	를
	하(겨이	: હૃં	나다							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전담할 북한이탈 주민조사관(이하 "조사관"이라한다)을 둔다.
- ⑥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신청자에게 제7조의2 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- ①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 보호조치의 <u>내용 및 방법과 제</u> 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 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- 8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 에 대한 조사 후 통일부 등 관 계기관과의 합동심문을 실시한 다.
- ⑨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
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
 동의를 얻어 조사 또는 합동심
 문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.
- ① 국가정보원장은 조사를 마 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보호신청자의 권리) ①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

행사하기 원하는 보호신청자를 위하여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해 필요 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.
- ① 보호신청자는 조사관의 조사과 및 관계기관의 합동심 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사관 및 관계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제7조의3(국제기구와의 교류·협 력)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보호 신청자의 상황 등에 관한 자료 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국제기구나 보호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국제기구가 다음 각 호

<신 설>

- 제15조(사회적응교육 등) ① (생 략)
 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 ②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 체의 장-----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(생략)
- 제15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) | 제15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)
 -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 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 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·생활정보제공·취업 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 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 록 전문성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 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 하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 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- 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.
- 1. 보호신청자 면담
- 2. 제8조의 보호결정 여부에 관 한 의견 제시
- 제15조(사회적응교육 등) ① (현 행과 같음)

 - ③ (현행과 같음)

 - ①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------지역적응센터----

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 ②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

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 (생 략) 🔻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<u>지방자치단체장</u>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6조(생활보호) 제11조에 따른 저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교육감을 말한다)에게 신청하는 경우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8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2, 제12조의3제2항 및 「주거급여법」 제5조에

<u>세의 경</u>
 제99구/기즈기 ㅂ호\ ① (청체기
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 (현행과
같음)
2
니 수 네 지 키 시 _ 키 즈 키
보호대상자의 거주지
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
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
<u>한다)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생활보호) ①
<u>말한다. 이하 이</u>
조에서 같다)에게 신청하거나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

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.

1. ~ 7.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 략)

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보호 기간이 만료되 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생활보호 기간 연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. ----<u>국가 및 지방자</u>치단체-

② (현행과 같음)